

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40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5. 2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6. 2
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1999. 6. 24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0 지방세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감면조례상의 해당 조항을 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.

3. 주요골자

- 0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(안 제24조의 3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경남도표준안 근거에 의거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소 1000분의 3에서, 최대 일정금액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까지 체차세율로 적용 시행하였으나
- 0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으로 감면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해당조항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0 경상남도 표준안이 1999.1.11 자로 시달 되었음에도 적용시기를 소급 적용치 아니하고 1999.5.19 자로 적용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6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